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FTC, 인텔에 대한 동의심결안 승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3월 17일 세계 최대의 마이크로프로세스(microprocessor) 제조업체인 인텔(Intel Corporation)이 마이크로프로세스시장에서 자사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장지배력을 사용한 데 대한 심판사건의 동의심결안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FTC는 '98년 6월 인텔이 동사의 거래선 등 3사에 대하여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스를 내장한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사전기술정보 및 제품의 샘플을 계속 이용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위법하게 시장지배력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심판개시결정을 한 바 있다.

동 심판개시결정서에 의하면 인텔은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Intergraph Corporation 및 Compaq Corporation 3사에 대하여 동 3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인텔에 라이센스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 정보제공을 중단하였다. 상기 동의심결안에 따라 인텔은 지적소유권의 라이센스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전정보 기술의 제공을 중지 또는 중지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제품공급과 관계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동 동의심결안은 합법적인 영업상의 이유 때문에 정보나 마이크로프로세스의 공급을 중지하는 인텔의 권리는 보호토록 되어 있다.

FTC의 로버트 비도후스키 위원장은 「인텔에 대한 심판개시결정서의 핵심은 독점자가 지적소유권 분쟁의 와중에 있는 거래선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품이나 재품정보의 공급을 중지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는 소규모 경쟁업자의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의 보호와 우월적인 사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상호 충돌할 때 본질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가에 있다. 본 동의심결안은 인텔의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함이 없이 경쟁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위원회 직원이 심판에 따른 모든 절차를 성공리에 종료한 후에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캘리포니아주의 「싼타크라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텔의 전세계 매상액은 약 208억불이다. 동사는 펜티엄, 펜티엄MMX, 펜티엄프로, 펜티엄II 및 펜티엄III의 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련의 마이크로프로세스 제품을 포함하여 많은 종류의 설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인텔에 대한 제소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FTC의 심판개시결정서에서 인텔은 마이크로프로세스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인텔의 시장에서의 우위성으로 인하여 높은 참입장벽과 약 80%의 시장점유율(금액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마이크로프로세스는 컴퓨터의 중추부분으로서 「컴퓨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처리시스템에서 주요한 기능을 하는 동시에 당해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는 다른 기기를 컨트롤하는 역할도 한다. FTC에 의하면 최신의 마이크로프로세스 제품에 대한 사전기술정보는 컴퓨터제품을 설계·판매하는 인텔의 거래선에게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인텔은 신제품에 관한 정보를 공식적인 발매 이전에 거래선에 제공하여왔다.

심판개시결정서에 따르면 인텔은 지금까지 계속하여 온 3사에 대한 사

전기술정보와 동사의 마이크로프로세스 제품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인텔은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선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된 기술의 라이센스를 강요하였다고 FTC는 주장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이들 3사 및 기타 사업자가 인텔과 경쟁하는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경쟁을 감소시키고 인텔의 시장지배적지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본 동의심결안에 의하여 인텔은 당해 거래선과 지적소유권분쟁과 관련되고 있다는 이유로 거래선에 대하여 마이크로프로세스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거부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당하게 된다.

이번의 동의심결안에서는 인텔이 자사제품 또는 사전기술정보를 공급할 의무가 없는 특정의 상황에 대하여도 명백히 하고 있다. 예를 들면,

1. 거래선이 정보의 개시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보 또는 제품이 다른 거래선에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경우
3. 정보가 경합되는 마이크로프로세스의 설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본 동의심결안은 60일간의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에 회부된 후 위원회의 최종심결이 이루어진다.

■ 1999년 3월 17일, FTC발표 요약문

미 법무부, SBC-Ameritech 기업결합 인가

미국 법무부는 3월 23일 SBC Communications Inc.가 Ameritech Corp.를 취득하여 미국 최대의 지역전화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에 대하여 조건부로 인가하였다.

이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이들 베이비 벨(과거의 벨 전화회사가 강제적으로 기업분리된 결과 탄생한 기업)은 13개 주를 연결하는 미국 전화회선의 3분의 1인 5,700만 회선을 지배하는 거대한 지역전화회사로 변모할 것이다.

법무부는 이들 회사가 17개 시장 각각에서 휴대전화 서비스자산 중 일부를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인가하였다. 이번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SBC사는 Comcast Corp.의 휴대전화 사업부문을 매수하기 위한 또 다른 기업결합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난 '98년 5월의 계획 발표시에 570억 달러로 평가된 당해 기업결합은 앞으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가도 받아야 한다.

샌안토니오에 소재한 SBC사와 시카고에 소재한 Ameritech사는 이러한 기업결합 조건에 합의하였는데, 이들은 앞으로 일리노이, 인디애나 및 미주리 주 시장에서 이들 두 회사의 휴대전화 서비스자산 중 어느 한 쪽을 매각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시장에는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 같은 주요 대도시 지역이 포함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는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이 요구한 자산매각 협정 중 최대규모의 것이다. 벨사의 후신인 전화회사는 연방법상의 규제로 인해 한 시장에서 하나 이상의 휴대전화나 무선전화 서비스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자산매각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품질은 더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라고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은 말하였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이들 회사의 지역전화 서비스영역이 결합됨으로써 당해 기업결합의 결과로 탄생하는 회사는 위스콘신 주에서 텍사스 주까지의 서비스영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들 회사의 주주들은 모두 당해 기업결합을 승인하였으며, 관련회사들은 올해 중반까지는 기업결합이 완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 확장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온 FCC는 당해 기업결합에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기업결합 저지를 포함하여 어떠한 선택안도 배제하지 않은 상태이다.

■ 1999년 3월 24일, Los Angeles Times

미 FTC, Barnes & Noble사의 Ingram Book Group 취득 심사

Barnes & Noble Inc.이 미국 최대의 서적도매업체인 Ingram Book Group의 취득을 발표함으로써 도서산업을 놀라게 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당해 기업결합계획은 연방정부의

엄중한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제는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실의 조사도 받고 있다.

작년 11월 초에 6억 달러 규모의 당해 취득이 발표되었을 때, Barnes & Noble 사의 최고임원들은 상기 미국 최대의 서점 체인과 서적도매업체 간의 기업결합이 35일 내지 45일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예견하였지만,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트러스트 심사는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한편 독립적인 도서판매업체들은 도서산업사상 가장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펼쳐 FTC에 대하여 수많은 청원, 전자우편 및 전화를 통한 호소를 행하였으며, 그 결과 동 위원회는 Ingram사 관련 통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전용선을 설치할 정도가 되었다 ("만일 당신의 전화가 Barnes & Noble-Ingram 기업결합에 관한 것이라면 1번을 누르십시오"라고 음성녹음안내가 알려 준다).

Ingram Industries의 사업부문인 Ingram사에 대한 Barnes & Noble사의 취득은 FTC로부터 "신청 재심사"로 알려져 있는 심사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는 드문 경우로서 동 위원회는 이 경우 제안된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확대할 수 있다.

검토기간 및 검토종류의 차이가 반드시 당해 기업결합이 심각한 문제에 부딪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다른 도서산업 내 기업결합도 연방규제당국의 엄밀한 심사를 받았으나 종국적으로는 인가를 받았다.

영국 방송그룹인 Pearson PLC는 Simon & Schuster사의 교육사업부문의 취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단계의 심사를 받았으나 결국 인가를 받았다. Bertelsmann AG의 Random House사 및 Bantam Doubleday Dell사 취득도 추가적인 심사를 받은 바 있다.

Ingram사 취득은 캘리포니아 주 서점들로부터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이 상황에서 주 정부 법무장관 대변인은 4월 2일 동 장관실이 당해 기업결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라고 Bill Lockyer 법무장관의 공보업무 담당인 Sandra Michioku 대변인은 언급했다. "앞으로 우리는 당해 기업결합의 영향을 검토하고 이것이 반경쟁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FTC가 당해 기업결합을 인가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법원 판사에게 이를 저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Michioku 대변인은 말하였는데, 동 주가 관여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서는 언급을 회피하였다. 대변인은 다른 주도 당해 기업결합을 조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였다.

커넥티컷 주 법무장관실은 현재 FTC의 심사를 주시하고 있으나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주 정부 법무장관이 이러한 기업결합에 관심을 갖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닌데, 이와 관련하여 우려가 제기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Keating 대변인은 말하였다. 그는 당해 회사는 "이번 취득이 인가를 받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과의 전화회의에서 Barnes & Noble사의 회장이자 최고경영자인 Leonard Riggio는 FTC의 결정이 60일 내지 90일 내인 6월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내쉬빌에 소재하고 있는 Ingram사는 도서유통 분야에서 지배적인 업체이다. 상장회사가 아닌 관계로 동 회사는 시장점유율을 공표하지 않는다. Barnes & Noble사의 매출액은 소매 도서시장의 약 14%를 점한다.

일반적으로 동 기업결합의 반대자들은 Ingram사 취득으로 인해 Barnes & Noble사가 독립적 경쟁업체들의 매출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거나, 공급이 달릴 인기있는 책들로 서점들을 채우는 한편 Amazon.com과 같은 경쟁업체들에는 도서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기 기업결합에 대한 몇몇 반대자들은 3월 Entertainment Marketing Information Services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겠다는 Ingram사의 발표 이후 안도하였다.

반대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Ingram사가 독립적 도서판매업체들에 관한 정보를 Barnes & Noble사에 유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 1999년 4월 5일, The New York Times

미 FTC, BP Amoco-ARCO 기업결합 심사중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월 8일, 동 위원회가 Atlantic Richfield Co.(ARCO)를 268억 달러로 취득하겠다는 BP Amoco의 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거래위원회가 BP Amoco와 ARCO간의 기업결합 제안을 심사중이라는 사실은 확인하여 줄 수 있다"라고 FTC의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동 대변인은 이들 회사가 실제로 기업결합 신고서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률 및 관행상 FTC는 기업결합 신고서의 접수 전이라도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할 수 있다.

영-미 석유 대기업인 BP Amoco와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ARCO간의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시장가치가 1,900억 달러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상장 석유회사가 탄생하게 되며, 이는 미국 최대의 정유업체이기도 하다.

FTC는 기업결합 제안이 위원회에 접수되면 우선 30일간 반트러스트 위반이 있는지에 대하여 당해 제안을 검토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들은 당해 기업결합은 6개월 내지 9개월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알래스카 주의 법무장관은 FTC가 당해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이 기업결합이 알래스카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BP Amoco와 ARCO는 전부 합쳐 알래스카 주의 North Slope 유정 소유권의 75% 및 Trans-Alaska Pipeline System을 운영하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알래스카 주법에 따르면 한 회사가 주 소유지 중 50만 에이커 이상의 지역에서의 시추 허가를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BP Amoco-ARCO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면 86만 에이커가 새로이 탄생하는 회사의 통제하에 있게 되나, 이들 회사는 알래스카 주법을 준수하기 위해 36만 에이커를 포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FTC는 가솔린 소매판매에서의 이들 회사의 시장의 중첩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번 기업결합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트러스트 전문 법률가들은 말하였는데, 왜냐 하면 BP Amoco는 주로 동부에서 활동하고 ARCO는 서부에서 사업활동을 벌이기 때문이다.

■ 1999년 4월 9일, Los Angeles Times

E U

유럽위원회, 신문용지 카르텔 조사

유럽위원회는 대다수의 유럽 신문 및 잡지용지 제조업체들이 1989~95년 동안 가격고정 및 시장공유 카르텔을 운영하여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식적 조사를 개시하였다.

유럽위원회는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이탈리아 및 프랑스의 회사들이 가격 고정, 국별 쿼터 설정 및 고객 할당에 관여하였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믿고 있다. 동 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공식 이의제기 성명서를 발송하였다.

만일 이들 업체가 유죄라고 결정된다면 이들은 최고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벌금은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및 심각성을 반영하게 된다.

일부 소규모 업체들이 과도한 신문용지 제조비용으로 인해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과 같은 중요한 요인들도 고려될 것이다.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반경쟁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거는 4년 전 동 위원회가 21개 회사를, 그리고 이후에 2개 신문용지협회 - 독일제지업체협회와 독일종이수입업체협회 - 를 수색할 때 포착되었다. 당시의 조사는 유럽 출판사들로부터의 불만이 접수된 후에 개시된 것이었다.

출판사들은 잡지비용의 25%를 차지하는 신문용지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관행에 따라 정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영국에서 특히 심하였는데, 일부 잡지사들은 1990년대

중반의 가격인상에 따라 잡지 크기를 줄여야만 했다.

유럽위원회는 특히 1994년 여름에 영국에서 신문용지 가격이 15% 인상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U 소식통에 따르면 동 산업에서의 가격인상은 1989년에서 1995년 사이 7차례의 회합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관련된 회사들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에서는 두 주요 제조업체 - Steyrermühl사와 Leykam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 그룹인 UPM-Kymmene사와 스웨덴 그룹인 Stora Enso사 또한 이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Stora Enso사는 3월 31일 동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두 북부 유럽 국가는 유럽 잡지용지 시장의 약 절반을 지배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접촉한 회사들은 이제 공식 이의제기 성명서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갖게 된다. 작년에 동 위원회는 스위스-스웨덴 합작의 공업그룹인 ABB사에 대하여 가격고정 카르텔을 주도하였다고 하여 7,000만 유로(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동 위원회가 개별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벌금액 중 최고였다.

동 위원회가 조사한 다른 카르텔에는 시멘트 산업, 골판지 산업 및 나무 펄프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 초에 위원회는 유럽 은행들이 유로화 관련 거래에 부과하는 수수료 수준에 대하여 담합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다수의 은행들을 수색한 바 있다.

■ 1999년 4월 1일, Financial Times

일 본

공취위, 엑슨 - 모빌 기업결합 심사

공정취인위원회가 미국 대형 석유회사인 엑슨사와 모빌사간의 기업결합계획에 대하여 일본의 독점금지법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이 3월 22일 밝혀졌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독금법에서 지금까지 대상 밖이었던 외국기업끼리의 기업결합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규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기업의 대형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의 심사이다. 공취위는 「엑슨·모빌」이 탄생할 예정인 1999년 중반까지 심사결과를 작성할 계획이다.

미국 석유업계 최대기업인 엑슨사와 2위인 모빌사는 1999년도말 기업결합에 합의하였다. 기업결합 이후에는 연간 매출액 규모가 24조엔이 되어,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된다.

공취위는 개정 독금법의 시행에 뒤이어 「엑슨·모빌」사가 일본의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심사를 개시하였다. 양 회사의 산하에 있는 일본 엑슨석유와 모빌석유 등의 일본시장에서의 점유율 조사에 착수, 석유의 정제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에서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 1999년 3월 23일, 요미우리신문

공취위, 카르텔 관련 주철관 3사에 배제권고

수도관 등에 사용하는 직선용 도관 주철관의 판매를 둘러싼 부당한 카르텔 사건에서, 공정취인위원회는 3월 26일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으로 구보타, 구리모토(栗本) 철공소 등 주철관 3개 회사에 배제권고를 하였다.

동 사건의 형사처분은 도쿄고검이 1996, 1997년 도중의 행위에 대하여 3개 회사와 각 회사의 영업담당간부 합계 10인에 대한 기소를 끝마친 상태이다. 행정처분인 배제권고는 위반행위의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발하여지기 때문에 1997년도분만이 대상이 되나, 앞으로 각 회사가 권고를 응낙하면 1996년도분도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3개 회사는 일본 내 도관 주철관의 총수요량의 거의 100%를 공급하고 있다. 약 40년 전부터 3개 회사의 수주량 비율을 구보타사가 63%, 구리모토 철공소가 27%, 일본주철관이 10%로 하는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7년도의 구체적인 배분율은 같은 해 7월 이들 3개 회사의 영업담당부장, 과장들의 회합에서 결정되었다.

이들 3개 회사가 자치체 등으로부터 직접 수주한 것은 20%였다. 간접 수주분의 비율은 안정되어 있어, 이들 3사는 직접수주분에 대하여 입찰 때마다 낙찰할 회사를 결정하는 등으로 점유율을 최종 조정하였다.

■ 1999년 3월 27일,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집합주택 납입 관련 카르텔로 주방용기 7개사에 배제권고

주택·도시정비공단과 도쿄 시가 건설하는 집합주택에 대한 부엌설비의 납입을 둘러싸고 업계의 대기업인 선웨이브 공업(본사 도쿄 시부야(澁谷) 구) 및 다카라 스탠다드(본사 오사카 시) 등 주방기기 제조·판매회사 7개사가 사전에 납입예정자를 결정하는 등 암묵적 카르텔을 결성하고 있었다고 하여, 공취위는 3월 31일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에 의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배제권고를 하였다.

권고를 받은 업체는 위의 2개사 이외에 크리나프(본사 도쿄 아라카와(荒川) 구), 나스스테인레스(본사 도쿄 시나가와(品川) 구), 미가도(본사 오사카 시), 베르테크노(본사 아이치(愛知) 현 비사이(尾西) 시), 도오요오 공업(본사 기후(岐阜)현 세키(關) 시)이다.

권고서 등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1997년 4월경부터 주택·도시정비공단이 수도권에서 신·개축하는 집합주택에 설치되는 싱크대 및 조리대 등의 부엌설비의 납입을 둘러싸고 「챔피언」으로 불리는 수주예정자를 결정하는 암묵적 카르텔을 결성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들 7개사는 매년 부·과장급의 회합을 열고 각 사마다 판매수량의 비율을 결정, 배분받은 수량을 근거로 물건마다의 챔피언을 결정, 챔피언 이외의 회사는 판매선인 건설업체 및 판매점에 대하여 챔피언의 견적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챔피언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베르테크노사를 제외한 6개사는 도쿄시가 신·개축하는 시영주택에 설치되는 부엌설비에 대하여서도 똑같은 수주조정을 반복하여 왔다.

또한 공취위는 선웨이브 공업과 다카라 스탠다드사, 크리나프사, 나스스테인레스사 4개사에 대하여 수도권의 민간집합주택에 설치되는 부엌설비에 대하여서도 수주조정을 반복하여 왔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여 독금법 위반 협의로 경고하였다.

배제권고에 대하여 선웨이브 공업 등 각사는 「엄숙히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 1999년 4월 1일, 아사히신문

캐나다

캐나다정부 경쟁법 개정 - 금년 3월 18일부터 시행 -

캐나다 정부의 경쟁법 개정(안)이 '98년 9월 23일 하원을 통과, '99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의 개정은 경제활동 및 법집행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동법의 집행에 대한 유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경쟁법을 현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화에 의한 기만적인 권유에 대하여 채취할 수 있는 집행상의 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설치

② 허위광고 및 기만적인 판매관행에 관한 구제조치의 범위 확대, 당해 절차에 관한 비형사심판제도의 창설

③ 통상판매가격(regular selling price)에 관한 표시행위의 취급을 보다 유연성있게 하고 명확히 하였음

④ 공모·담합 및 기만적인 텔레마케팅에 관련된 사적통화를 감청하는 것에 대한 재판관의 허가행위를 인정

⑤ 기업결합신고절차를 개정

⑥ 법률준수를 촉진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의 제소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금지명령에 대한 규범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권한의 확대

⑦ 특정의 표시관계 법규의 운용 및 집행에 관한 기존의 책임을 정식으로 인정

■ 1998.9.23, 캐나다의회 발표문 & 1999.3.18, 캐나다 경쟁국 발표